

---

 ◆ 政府施策 ◆
 

---

## '97年度 中小企業 육성시책 발표

### — 中企 구조개선 2조원 支援 —

내년부터 성장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유망하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거래선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00억원의 경영정상화자금이 지원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스톡옵션제도가 도입되고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범위가 전업종에 걸쳐 5년간 50%로 확대·통일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확정·발표했다.

시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6천여개 업체에 2조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제조업 이외 제조업 겸업 유통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설, 중소기업의 주요 요소기술 개발과 첨단기술의 실용화 등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에 81억원이 지원되고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범위가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건설업·광업·물류산업·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되고 공제대상 비목도 국외전문기관 위탁교육비, 국내외 이공계 대학·기업체 위탁훈련비 등이 추가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서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예산이 25억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투자협력 제한 등 창투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중소기업자의 업종전환시 뿐만 아니라 업종 추가시에도 동일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규모가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억원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조성규모도 3천억원으로 늘어나 연쇄부도 방지대출 위주로 운영된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연쇄부도 방지대출인 1호 대출 비율을 올해 44.2%에서 내년에는 53.0%로 8.8%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KS허가 認證制度로 전환 — 通産部, 산업표준화제도 改善방침 —

통상산업부는 KS표시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분야의 긴급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산업표준화 정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표준화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통산부는 우선 산업표준화를 그동안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기로 하고 현행 KS표시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변경, 인증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민간주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을 현재의 정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신기술분야의 긴급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표준화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표준을 정해 운용하는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갈수록 높아지는 기술장벽 해소로 수출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를 적극 추진기로 했다.

다만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합화 지침마련 및 수요조사 등 증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 ISO 14000 認證 본격 실시

## — 運用要領제정, 9000 認證과도 통합추진 —

통상산업부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용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ISO 14000(환경경영체제) 인증이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제정된 운용요령의 주요 특징은 우선 기준 및 원칙 등을 ISO 14010-14012, ISO /IEC Guide 61, 62, ISO 10011-1 등 국제기준에 부합시켜 국제수준의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토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인증 및 연수기관의 지정, 인증심사원등록 등 인정 업무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해 민간주도의 인증체제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ISO 9000(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와 연계해 통합추진도 가능토록 추진체제를 일원화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란 제품의 설계, 원료조달, 생산, 판매, 폐기 등 기업의 전생산활동 과정이 환경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국제환경경영체제규격(ISO 140001)의 요건에 적합하게 구축, 시행하고 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9월 1일자로 전세계에 통용될 환경경영체제규격(14001)을 제정했는데 이미 일부 선진국의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부 국내 기업들도 그동안 이들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기도 했다.

통산부는 선진국들이 대외무역 거래에 있어 ISO 14000 인증을 요구하는 등 무역장벽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운용요령의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본격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환경경영체제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시범인증서를 획득한 기업들은 약식 인증을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식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운용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심사범위를 35개 업종별로 분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범위를 부여받은 인증기관과 심사원만이 심사를 할 수 있다.

-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자문행위를 금지,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했다.
- ▲지정된 인증/연수기관, 인증심사원, 인증기업 등에 대해 연1회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한다.
- ▲인증획득 기업이 인증획득 사실을 허위, 과장 또는 오용하지 못하도록 인증표시의 사용 및 홍보 방법을 상세히 규정.
- ▲심사원을 경력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고 심사원 이상만 인증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단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계획 공고

- 통산부, 2단계기간 1308억원 투입 -

통산산업부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하나로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첨단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2단계사업(96. 12~99. 11) 기준중에 총 1308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사업 첫해인 올해 중 소형 CIM(통합생산시스템)등 7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3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첨단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5일까지 총괄주관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단계사업의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는 표준화 및 성능평가, 차세대 가공시스템, 첨단전자제품 조립시스템, 4개 중소형 CIM기술(핵심기계류 부품, 고정밀 성형제품, 고정밀 사출금형, 메카트로닉스제품) 등 7개 단위사업이다.

첨단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은 21세기 고도산업화 사회에 대응해 제품의 수요예측, 설계, 제조, 출하, 저장등을 총괄하는 통합 생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11월에 끝나는 1단계사업을 통해 유연생산시스템(FMS)개발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이 완료되는 99년까지 소규모 CIM을 독자적으로 설계·제작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나아가 3단계 개발목표인 지적생산시스템(IMS)단계의 생산시스템이 2002년에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자동화 가공기술 등이 세계 일류수준에 도달, 제조업의 생산성향상 뿐만 아니라 자본재 수입대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延支給수입기간 180일까지 허용

— 中企 97년 12월, 大企業 99년 12월부터 —

연지급수입기간이 수입물품의 용도, 수입기간, 수입지역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는 시기가 중소기업에게는 오는 97년 12월부터, 대기업의 경우 99년 12월부터로 확정됐다.

대기업의 수출선수금과 선박·플랜트 수출업체의 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폐지되는 시기도 각각 99년 12월로 정해졌다.

재정경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정문안상의 우리나라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발계획'이란 자료를 내놓으면서 OECD측과 최종적으로 합의한 자본이동자유화 및 금융시장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중 자본이동 자유화 일정을 보면 정부는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발행한도 폐지와 발행요건 완화조치를 오는 99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의 전면적인 자유화 조치도 99년에 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조달의무를 내년 12월에, 해외외화예금 한도를 98년 12월에 각각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용도를 자유화하는 시기와 현금차관 도입을 자유화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시 지속되거나 국내의 금리차가 2%이내로 축되는 시기'로 미뤘다.

외국인의 증권투자와 관련,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유화 시기도 '거시경제 안정 또는 내외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된 시기'로 미뤘다.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경우 금년 12월부터 일정한도내에서 무보증전환사채에 한해, 내년 12월부터 일정한도내에서 무보증장기채(5년 이상짜리)에 한해 외국인의 투자를 각각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경우 내년 12월에 일정한도내에서 무보증장기채에 한해 각각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자유화와 관련, 외국인 전체의 총액투자한도를 금년에 종목당 20%까지, 97년 23%, 98년 26%, 99년 29%까지로 점차 확대, 2천년 12월에 폐지할 예정이다.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96년말 종목당 5%)의 경우 2천년 12월 10%까지 끌어올리고 10% 이상의 투자는 직접투자관련규정에 따라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재경원이 발표한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계획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와 다국적기업위원회(CMIT /CIME) 합동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우리나라의 OECD가입 협정문에 수록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電子波규제 내년 7월 본격 시행 - 전기기기등 7종 EMI기준 통과해야 판매허용 -

내년 7월부터 승용차,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형광등 등 조명기기, 가정용 컴퓨터등 정보기기를 생산 내지 수입하는 업체는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장해(EMI) 방지에 관한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제품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전자기기가 전자파장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작동할 수 있는 전자파내성(EMS) 기준도 내년 승용차를 시작으로 오는 2천년까지 모든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해 적용,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 7종에 대한 EMI 방지 및 EMS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EMI 방지기준의 경우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승용차, 방송수신기,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및 부속기기, 정보기기등에 대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용구 중 호흡보조기와 보육기는 98년부터, 방사선 진료장치와 전기수술기, 4.5톤 이하 승합 및 화물차, 특수자동차등은 99년부터 적용한다.

EMS 기준은 의료용구와 자동차의 경우 기준 시행과 동시에,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방송수신기류, 가정용 전기 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정보기기류등에 대해서는 오는 2천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들 전자파장해 검정 대상기기를 생산·수입하려는 업체는 EMI 방지 및 EMS 기준을 통과해야만 해당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전자파장해 검정대상 기기는 △전기·전자기기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설비 △정보기기 △유선통신 단말기등 4종으로 돼 있다.

정통부는 이번 도입된 EMS 기준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채택된 것이며 EMI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MI 방지 및 EMS 기준 제정에 따른 관련 기기의 검·인증 업무는 통산부·건교부·복지부등 관련부처에서 시행하게 된다.

## 外國人연수생 事後관리 강화 - 企協서 事後관리업체 새로 선정 -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종전의 송출기관 국내 연락사무소는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만 사후관리업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업체는 연수생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수생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 방법 등은 사후관리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정하며 사후관리심의회가 지정, 취소 등을 의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협중앙회, 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로 분산돼 있던 연수생의 사후관리 기능과 책임이 기협중앙회로 일원화되게 됐다.

이와 함께 연수생에 대한 목돈 마련 기회 부여를 통해 안정적인 연수생활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연수수당의 50%(약 15만원) 이상을 정기적금에 가입토록 했다.

운영지침은 또한 연수생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자를 공개모집토록 했으며 입국전과 입국후에 건강검진을 실시, 질병보유자의 입국을 막도록 했다.

송출국가별 연수인력 도입을 위한 송출기관은 기협중앙회장이 선정토록 했는데 부적격자를 선발하거나 송출수수료 부당징수 등의 물의를 빚은 업체는 인원배정을 축소하거나 계약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우수 송출기관은 인원배정 확대 등 우대키로 했다.

이밖에 중기청장이 수출대상국의 선정, 취소 및 인원배정을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고 기협중앙회 내외국인연수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연수업체의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등에 대한 처벌도 명문화했다.

## KT마크 예정기술 76件 선정 - 科技處, 20일 이내 産技協에 異議신청 가능 -

올 하반기 국산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 76건이 선정됐다. 과기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된 총 259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제품특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국산신기술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76건을 KT마크 예정기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6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기계분야가 삼성항공의 '산업용 소형 가스터빈 엔진 기술' 등 23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분야가 LG전선(주)의 '전철용 고분자 장간애자 제조기술'과 현대중공업(주)의 '전동차용 전인 전동기 가변속 제어장치 기술' 등 20건, 화학분야 12건, 정보통신분야 10건, 소재분야는 LG전선(주)/대한전선(주)의 '마그네슘 주석 동합금선 제조기술' 등 7건, 환경분야 4건 등이다.

특히 이번 인정예정기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대기업간에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5건이 포함돼 대·중소기업간, 경쟁기업간 전략적 기술협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유형도 대기업이 핵심기술을 공동개발 또는 자체개발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제품개발에 성공한 후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유형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간에 각사의 연구개발자가 공동팀을 구성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 상업화는 각사가 추진하는 유형 등 크게 다양화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76개 예정기술에 대해서는 공고후 20일 이내에 산기협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11월초 국산 신기술인정서가 수여될 예정이다.